생명윤리위원회의 목표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관련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의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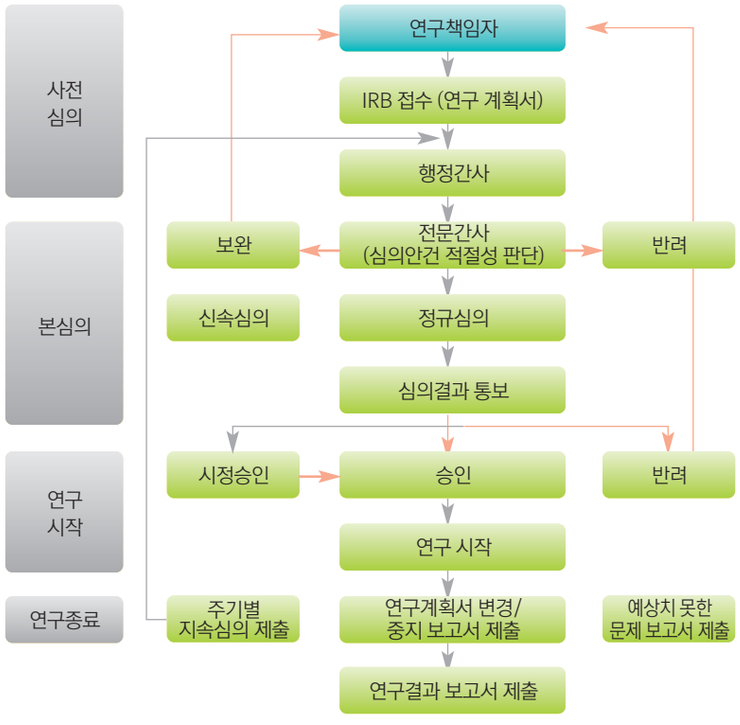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정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irb.or.kr)

UNIST 관련 규정 현황

윤리규정	주요내용
연구윤리규정	부정행위의 접수, 본조사,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
생명윤리위원회규정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에 대한 심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와 동물실험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

* UNIST 홈페이지 규정집(http://rule.unist.ac.kr)에서 원문 확인 가능

자료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연구윤리정보센터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울산과학기술원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진실성위원회
052-217-117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052-217-5214

생명윤리위원회
052-217-5214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기획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689-798
TEL 052-217-1172, FAX 052-217-1178, www.unist.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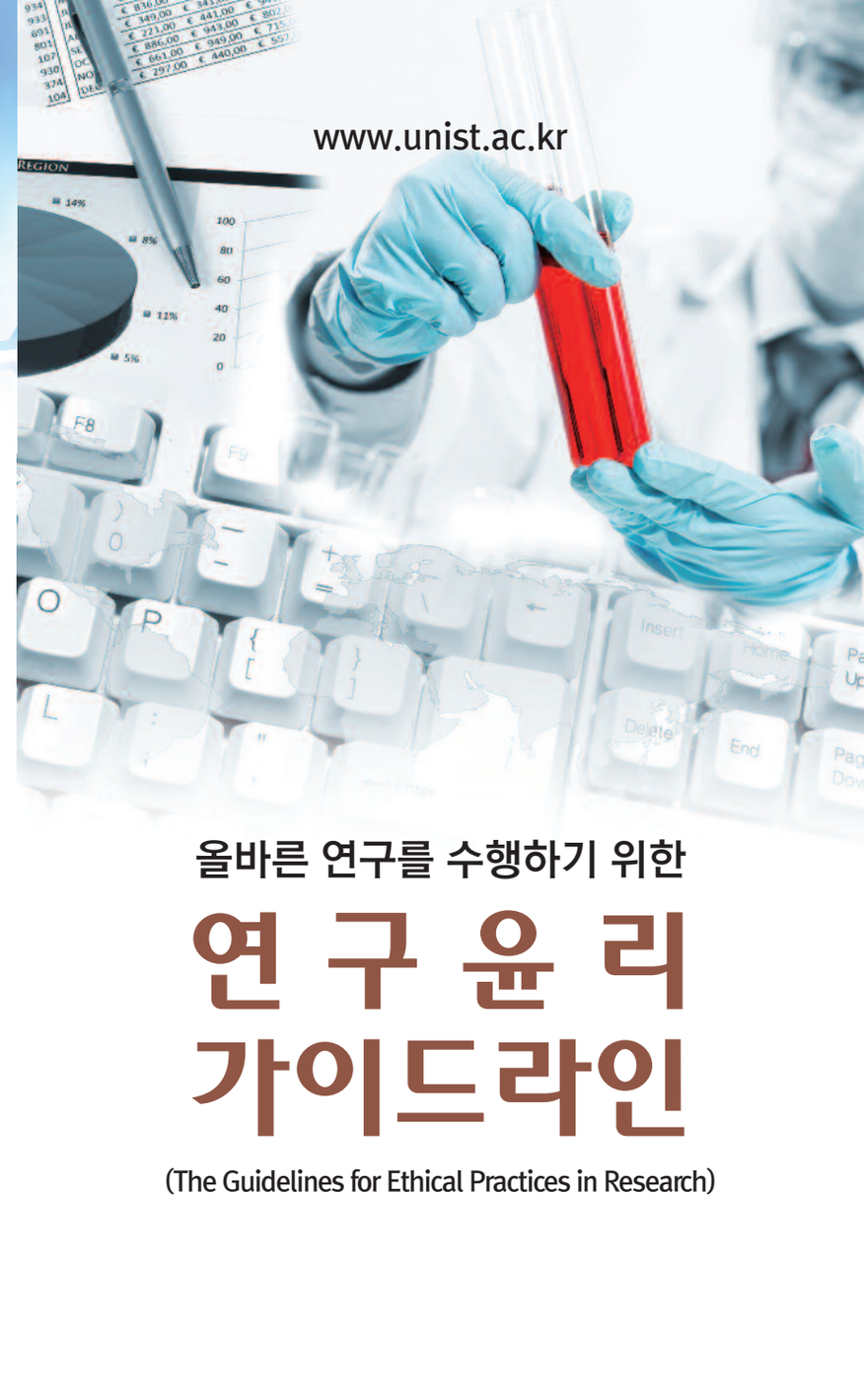

올바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The Guidelines for Ethical Practices in Research)

울산과학기술원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윤리의 정의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또는 행동 양식을 말함

연구 진실성은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서, 정직하게, 타당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그리고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음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변조
-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관련연구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와는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저자를 삭제 및 추가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의 정의

유형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행동)		바람직한 연구활동(행동)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s)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수행 (QRP)	책임있는 연구수행 (RCR) 좋은 연구수행 (GRP)
내용	위조, 변조, 표절 (FFP)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의 누락(data message or cooking), 무임승차 등	
비고	연구수행에서 가장 나쁜 행동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사이의 회색지대	연구수행에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행동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방법

제 보 자
구술, 서면, 전화, 전자 우편 등을 이용

→

울산과학기원
연구처장에게 보고

*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보자 신원공개 보호(단, 허위 신고 시 보호대상에 불포함)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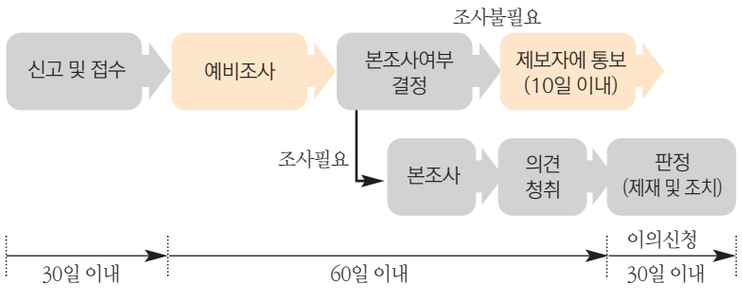

연구윤리 정보 검색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방법

모바일 앱/어플 다운로드
(Goolg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연구윤리 검색)

연구윤리 부정행위 검증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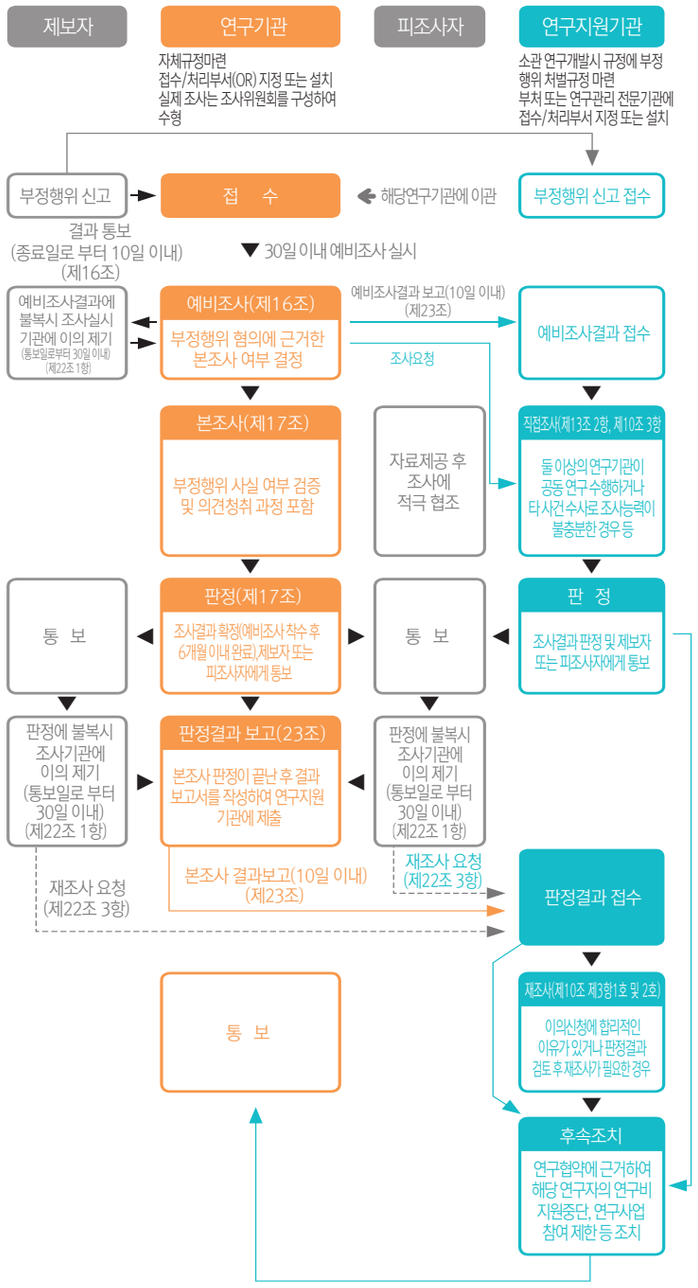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목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즉 '3R 원칙'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연구의 신뢰도와 품질을 향상시켜 생명의 존엄가치를 높이고자 함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실험의 기본원칙

항 목	내 용
Replacement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신하는 것
Reduction	가능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
Refinement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없어 최소한으로 동물을 이용할 경우 동물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치의 발생을 감소시켜 주는 것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 · 감독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한 조치 요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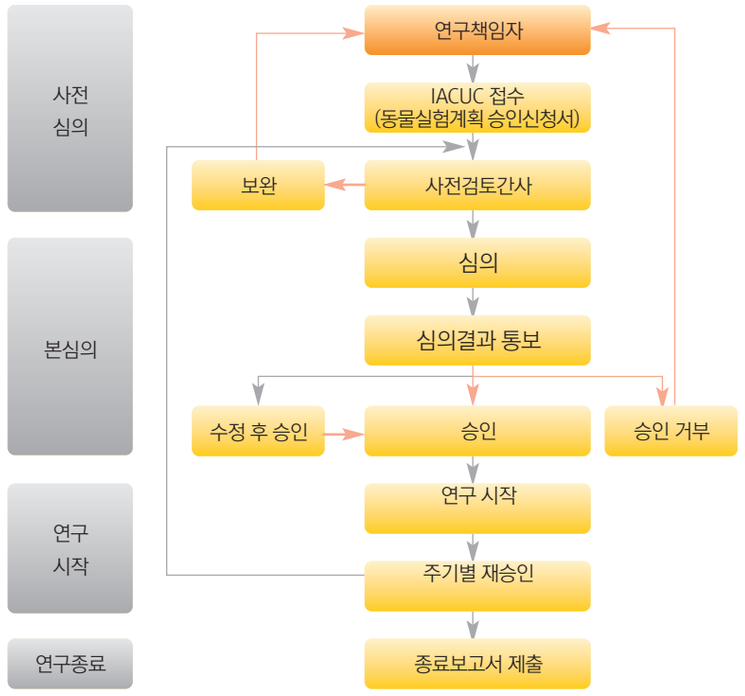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련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animal.go.kr/aec)